COUNSELING BOOKLET

KOREAN SUMMARY



Korea

Ⅰ. 작가의 변

Ⅱ. 행정지원

Ⅲ. 수업지원

Ⅳ. 사회적응 및 건강 지원

n Summary



KOREAN SUMMARY

Ⅰ. 작가의 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한국인 협력교사의 원활한 교수 · 학습을 돕고자 상담사례집을 발간합니다. 특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한국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데 이 책자 발간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가상적인 사례를 기술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례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개개인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고찰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 주) 본 책의 한국어는 영문 번역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음을 밝힙니다.

Ⅱ. 행정 지원

1. 건강 검진

모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에이즈(HIV)검사와 마약검사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러한 건강 검진에서 심각한 병이 발견된다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자비로 항공료를 부담하여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자는 한국에 오기 전에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한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 등록증(ARC)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면세

세금 역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세금면제 신청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면제를 위해 출신국의 권위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y)', 고용계약서 사본,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을 준비해서 소득지급자의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거주지 증명서'는 본인의 나라를 출발할 때 준비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도착하여 우편으로 받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비과세/면세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웹사이트 :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 www.nts.go.kr/eng

A. '중복세금면제'란 무슨 말인가요?

☞ '중복 세금면제'와 '세금면제'는 같은 말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지국가에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면세를 받습니다.

B. 영어 선생님으로서 한국에서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이며 국공립학교에서 교사로 2년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간의 조세조약 항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 캐나다와 아일랜드 국민은 왜 한국에서 세금면제를 받을 수 없나요?

☞ 세금면제는 한국과 해당 국가간의 세금면제 협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캐나다처럼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한국에서 세금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D. 한국에서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본국에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아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본국 정부가 정한 법을 따릅니다. 본국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본국의 세금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 한국에서 세금을 지불하는 것과 본국에서 세금을 지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롭나요?

☞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산출에 대해서는 본국의 세금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국의 세금산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G를 참고하세요.

F. 한국에서 이미 2년을 근무했습니다.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2년으로서 2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면세자격이 안됩니다.

G. 한국에서 세금면제를 못 받는다면 얼마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세율은 비교적 낮습니다. 영어교사의 평균 소득세는 소득의 2~4%입니다. 2백만원을 버는 교사의 한달 소득세는 3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득세는 연소득에 근거하기 때문에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정산을 통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최신 환율조회를 위해서는 www.xe.com/ucc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연금지불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세 면제는 연금 및 의료 보험료, 다른 각종 공제비와는 별도입니다. 면세를 받지 못하는 교사는 소득의 10% 정도를 연금으로 지불합니다. 국가에 따른 더 정확한 정보는 www.npc.or.kr/jsppage/english/main.jsp 에서 확인하세요.

I. 본국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어떻게 받나요?

☞ 거주자 증명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국의 관련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국의 권위 있는 당국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연금보험료

모든 EPIK 교사 소득의 9%는 연금보험료로 납부되는데 이 중 4.5%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거주국에 따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연금보험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환불은 재계약을 하거나 한국에 남아있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고 반드시 사회보호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며 한국을 영구적으로 떠날 때에만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국민만 해당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해당되는 서류준비와 지원서 마감일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지역 연금공단의 상황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속도가 다릅니다. 업무가 처리되는데 3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환불금은 한국의 통장계좌나 본국의 통장계좌로 송금됩니다.

4. 비자연장

대부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유효기간이 1년인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입국과 함께 비자가 개시되는 반면 계약일은 입국 후 10일 간의 사전연수 후에 개시되므로 비자 만기일이 계약만기일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만료하기 전에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민법은 매우 엄격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 한국에 머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비자 만료일 전에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가서 비자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연장 구비서류: 여권, 외국인 등록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추천서, 비자연장신청서, 신청비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참조

5. 학교배치

많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본인이 근무할 학교에 대한 정보를 빨리 알려주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교육시스템 및 교육문화 특성상 POE나 MOE가 결정을 빠르고 쉽게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6. 주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주거지는 근무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주거지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따라 아주 다른 주거지에서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집을 비교하지 않는다.' 라고… 주거지에 할당된 비용은 모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똑같습니다. 주거지에 불만이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협력교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7. 휴가와 영어캠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계약은 1년 단위이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이 계약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즉, 학생들의 방학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방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일주일에 22시간 근무를 하며 방학 때 진행되는 캠프가 있으면 캠프에도 참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를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휴가계획을 협력교사에게 알리고 문서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협력교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방학 중에는 영어 캠프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항상 방학 중의 학교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와 영어캠프와 관련된 사항 중 궁금한 점은 항상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협력교사 및 교장선생님과 의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Ⅲ. 수업지원

1. 학교체계

한국의 학교는 일반적으로 교무실과 행정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무실은 다시 여러 부서로 나뉘어지는데 각 부서에는 부장이 있으며 이러한 부장들을 관리하는 교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교사 외에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서교사,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계약제 교사가 있습니다. 행정실장은 행정실의 장으로 그 아래에는 다른 여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행정실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 등을 담당합니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협력교사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협력교사와 서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교사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른 영어교사나 영어부장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감과 교장선생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POE나 MOE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PIK 사무실은 계약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과 조언을 해 줄 수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POE나 MOE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2. 학교문화

한국학교는 6-3-3-4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제도를 따릅니다. 그리고 1년의 교육과정은 2학기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며 첫 학기는 3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나며, 두 번째 학기는 8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납니다. 학교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시험위주의 커리큘럼 때문에 학생들은 다소 수동적인 수업에 익숙해져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의 교수법을 시도하는 선생님들로 인해 한국학생들은 여러 가지 다른 수업방식에도 적응이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영어실력은 수준이 다양하여 영어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 있기도 합니다. 협력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고 교사들은 상호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 초등학교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오후 3~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정규수업 종료 후 학원에 갑니다. 공식적으로 영어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영어유치원 등에서 영어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 교육환경에서는 활동위주의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 합니다. 대부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담임선생님과 영어교과담임 등 여러 명의 협력교사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각 반 담임선생님의 말하기 영어실력은 영어교과 담임선생님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중학교

모든 중학생은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다닙니다. 일부 원어민교사는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학원을 다닐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를 “Hakwon Middle Schools”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못 할 경우 “Hakwon Free Middle Schools”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Hakwon Free Middle Schools” 학생들은 협력교사와 원어민교사 수업을 더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인문계, 실업계와 특수목적고로 분류됩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이라고 불리는 대학입시시험을 봅니다. 실업계 학생들은 농업, 상업 등 특화된 교육을 받습니다. 일부 실업계 학생들한테는 영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협력수업 스타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원칙적으로 한국인 영어교사와 협력수업을 하여야 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테이프 녹음기 역할, 둘째, 리더(주도자) 역할, 셋째, 파트너 역할입니다.

- 첫 번째, '테이프 녹음기'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할 때 발생하는 역할로 원어민 보조교사는 마치 녹음기처럼 영어를 읽고 학생들은 따라 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수업은 대개 원어민 보조교사와 학생 모두가 지루해하는 협력수업의 스타일입니다.

- 두 번째, '리더(주도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단독으로 교안을 짜고 수업준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수업준비를 잘 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세 번째, '파트너(협력수업)' 역할은 협력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요하는 형태입니다. 두 교사는 수업 단계별로 역할을 구분하여 각각 정해진 시간 동안 활동을 이끄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협력교사와의 관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협력교사간의 갈등은 사려 깊은 행동과 말로 극복될 수 있는 반면 부주의한 언행은 관계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 **대화부재 시**

  많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결강, 교내행사 등에 관해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마지막 순간에 통보 받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충분한 여유 없이 마지막 순간에 업무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교는 연간 혹은 월간계획을 미리 수립하므로 한국어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등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협력수업에 관한 견해 차이

- 체벌: 서구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체벌이 한국 학교현장에서는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협력교사와 원어민 교사는 수업시작 첫 해에 학생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교사가 특정 학생을 벌할 때 참견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무관심한 협력교사: 일부 협력교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시간에 교실에 가지 않거나 교실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계속될 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협력교사에게 정중히 수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서로 다른 수업스타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자신과 함께 가르치는 모든 협력교사와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협력교사가 매우 바쁘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수업자료를 협력교사에게 미리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위적 협력교사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독립심이 강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문화는 독립심보다는 협동심을 강조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협력교사의 연령이 많을 때 협력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간의 관계는 부모 자식간의 관계처럼 될 수 있습니다. 협력교사와 원어민 교사간의 관계를 학기 초에 명확히 하고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너무 바쁜(부재중) 협력교사

대부분의 협력교사들은 자진해서 원어민 관리업무를 맡기보다는 그 학교에서 가장 어리거나 신임교사이기 때문에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력교사들은 다른 교사

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원어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바쁘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이해가 요구됩니다.

● 준비가 부족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그 부담은 협력교사와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학기 초 신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협력교사의 수업 혹은 다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을 관찰하는 것이 향후 자신이 수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문화갈등과 해결방법

타협, 인내심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한국의 사회적 지위는 대체로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할 때는 사회적 위치와 장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교장이나 교육청 담당자를 찾기 전에 먼저 협력교사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언어와 문화 이해

언어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표가 오해의 폭을 줄이는데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서양인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무례한 표현	일반 표현	예의바른 표현
Do this Don't do that Can you not do that?	You should... Why don't you...? You'd better	Would you...? Could you? Do you mind?

▷ 한국인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무례한 표현	일반 표현	예의바른 표현
You should... You shall... Do this. Don't do that. Can you not do that?	Why don't you?	Would you...? Could you...? You'd better...

협력수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모두 차분하게,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존중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Ⅳ. 사회적응 및 건강 지원

한국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어민교사는 의미있는 경험을 한다고 느낍니다.

1. 문화인식 및 문화충격

● 문화충격: 문화충격은 자신이 살던 환경과 다른 곳에서 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한 감정을 말합니다. 문화충격을 받는 사람은 새로운 문화에 실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언어장벽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충격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문화충격 단계

- 신혼기: 문화적 차이가 로맨틱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환경의 음식, 문화, 건축과 사회상을 동경합니다.
- 협상기: 문화와 언어차이에서 오는 불편함 등에 분노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불안,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불만족을 느끼는 시기로 새로운 환경의 일상생활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 적응기: 6~12개월이 지난 후에 주로 나타나는 시기로 자국의 문화와 새로운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 문화충격의 표현

- 거부자: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 수용자: 새로운 문화를 완전히 받아들여 그 문화에 동화되어 삽니다. 외국인의 약 10%가 이에 해당됩니다.

- 코스모폴리탄: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장점을 수용합니다. 외국인의 30%가 이에 속합니다.

- 문화충격을 극복하는 방법: 취미생활, 긍정적 사고 방식, 인내심, 운동, 휴식, 명상 등

-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2. 정신건강

타문화에 노출됨으로써 느끼는 문화충격은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장기간의 슬픔, 자기비하, 무관심 등은 우울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취침습관, 사고방식, 식욕, 행동양식 등에 악영향을 미쳐 한 개인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우울증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우울증 증상: 비정상적인 취침습관, 무관심, 죄의식, 피로, 식욕부진, 불안증세, 자살충동 등
- 우울증은 약물복용과 심리치료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우울증 환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3. 사교 및 음주문화

한국의 음주문화는 교사들을 단합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문화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는 대부분 참석자 전원이 모였을 때 시작됩니다. 윗사람이 술을 권할 때는 술을 두 손으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음주를 즐기지 않는 사람은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를 주문합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날 과음을 했어도 다음 날 정시에 출근합니다.

4. 사교문화

- 프라이버시: 한국의 교사들은 대부분 사무실을 공유하지만 대부분의 서양국가에서 서양인들은 자신의 사무실을 따로 갖습니다.

- 데이트: 데이트 초기단계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공간: 많은 원어민 교사들은 개인공간이 부족함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 부딪힘: 원어민 교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이 실수로 어깨 등을 치고 그냥 지나치는 모습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 개인적인 질문: 한국인들이 나이, 사회적 지위, 결혼여부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할 때 원어민 교사들은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